선람	기관의장

익산시 시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47호 2022년 9월 30일

발 행 자 : 익 산 시 청
발 행 처 : 홍보담당관

고 시

- 익산시 고시 제2022-161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 01
- 익산시 고시 제2022-1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04
- 익산시 고시 제2022-166호 익산시 역사가문화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고시 ····· 08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2-2586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 익산시 공고 제2022-2619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회람								

● 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iksan.go.kr ● 홍보담당관 TEL : (063)859-5025

익산시 고시 제2022-161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6.

익 산 시 장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화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 익산시 환경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3. 이해관계인은 익산시 환경관리과(☎859-54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내역

읍 면	읍면의 전체 면적	전부제한구역 면적	비율	모든축종 제한구역 (500m) 면적	비율	닭 오리 개 돼지 제한구역 (1,000m) 면적	비율	돼지 제한구역 (2,000m) 면적	비율	제한구역 면적 합계	비율
함열읍	18,934,395	2,182,903.47	11.53%	16,445,998.21	86.86%	305,493.32	1.61%		0.00%	18,934,395.00	100.00%
오산면	30,003,760	5,458,146.62	18.19%	23,028,643.05	76.75%	1,452,692.12	4.84%	64,278.21	0.22%	30,003,760.00	100.00%
황등면	27,719,849	4,875,519.62	17.59%	22,333,591.16	80.57%	507,780.49	1.83%	2,957.73	0.01%	27,719,849.00	100.00%
함라면	22,797,487		0.00%	22,726,532.17	99.69%	70,954.83	0.31%		0.00%	22,797,487.00	100.00%
웅포면	32,809,007		0.00%	28,299,867.04	86.26%	4,321,093.71	13.17%	188,046.25	0.57%	32,809,007.00	100.00%
성당면	19,451,629		0.00%	18,255,784.47	93.85%	1,195,844.53	6.15%		0.00%	19,451,629.00	100.00%
용안면	25,757,607	635,660.62	2.47%	19,707,584.21	76.51%	5,238,926.96	20.34%	175,435.21	0.68%	25,757,607.00	100.00%
낭산면	34,879,182	2,779,614.57	7.97%	31,526,663.39	90.39%	572,904.04	1.64%		0.00%	34,879,182.00	100.00%
망성면	31,853,814		0.00%	30,312,127.67	95.16%	1,450,530.74	4.55%	91,155.59	0.29%	31,853,814.00	100.00%
여산면	36,652,862	6,097,296.72	16.64%	29,640,712.45	80.87%	899,833.25	2.45%	15,019.58	0.04%	36,652,862.00	100.00%
금마면	28,519,936	13,738,495.58	48.17%	14,781,440.42	51.83%		0.00%		0.00%	28,519,936.00	100.00%
왕궁면	46,243,897	8,794,521.57	19.02%	37,096,158.75	80.22%	353,052.34	0.76%	164.34	0.00%	46,243,897.00	100.00%
춘포면	29,154,674	18,105,210.95	62.10%	10,802,633.87	37.05%	246,829.18	0.85%		0.00%	29,154,674.00	100.00%
삼기면	23,327,256	5,739,895.42	24.61%	17,585,421.68	75.38%	1,938.90	0.01%		0.00%	23,327,256.00	100.00%
용동면	16,668,011		0.00%	16,028,221.31	96.16%	639,789.69	3.84%		0.00%	16,668,011.00	100.00%
동지역	82,252,886	82,252,886.00	100.00%		0.00%		0.00%		0.00%	82,252,886.00	100.00%
합 계	507,026,252	150,660,151.16	29.71%	338,571,379.85	66.78%	17,257,664.09	3.40%	537,056.90	0.11%	507,026,252.00	100.00%

*단위는 제곱미터(m^2)를 사용하였습니다.

*읍면별 전체 면적은 KLIS에 등제된 읍면동경계shp 파일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5. 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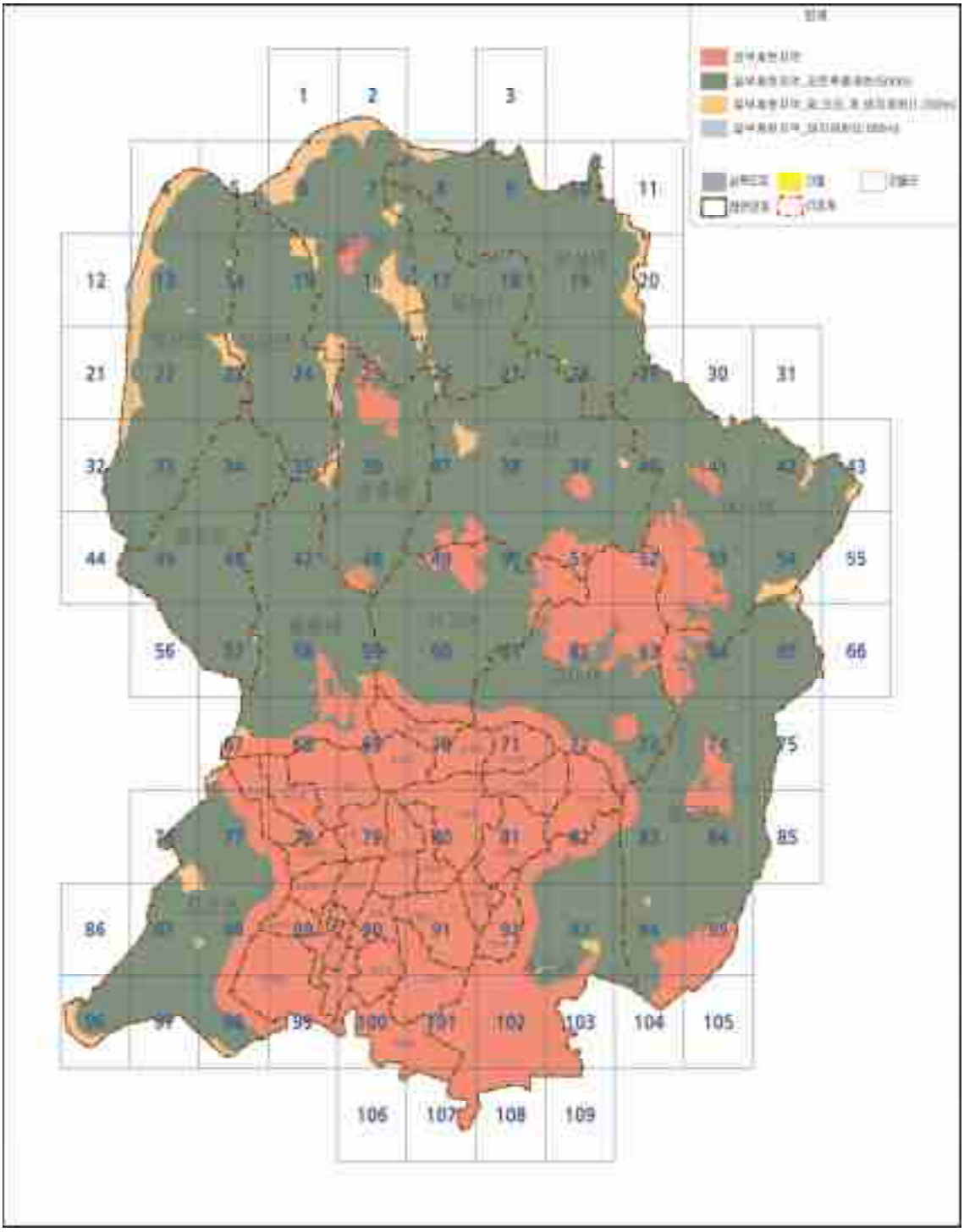
범례
1
2
3
11
12
20
21
30
31
32
43
44
55
56
66
75
85
86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익산시 고시 제2022-1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익산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모인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익산시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9월 23일

1. 사 업 명 : 익산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모인파크 주식회사 대표 김승필
3. 위　　치 : 익산시 모현동2가 1-5외 50필지
4. 사업내용
   가. 대지면적 : 34,016㎡
   나. 건축면적 : 6,316.737㎡
   다. 연 면 적 : 146,567.1814㎡
   라. 규　　모 : 지하2층 / 지상29층, 834세대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바. 공급방식 : 공동주택(아파트) / 임대 및 분양
   사. 사 업 비 : 338,994,372천원
   아. 사업기간 : 2022. 07. ~ 2025. 08.
5. 주요변경내용
   - 지적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33,967㎡ → 34,016㎡)
   - 단위세대 세분 및 평면 변경
   - 사업비 변경(349,014백만원 → 338,994백만원)
6. 승인번호 : 2022-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2022. 07. 22.)
7.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익산시 주택과 비치)
8. 의제처리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의 고시
   -「주택법」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에 따라 협의한 사항

익산 도시관리계획(모인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47	모인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익산시 신동 500-7번지 일원	34,980	증) 117	35,097	익산시 고시 제2022-128호 (22.07.2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47	익산시 신동 500-7번지 일원	35,097	◦ 「익산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구역(선형)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4,980	증) 117	35,097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3,967	증) 49	34,016	96.9	비공원시설 부지
자연녹지지역	1,013	증) 68	1,081	3.1	비공원시설 가감속차로 및 공원

주) 상기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모인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에 한함

주) 기정사항은 2022년 7월 22일「익산시 고시 제2022-12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상의 결정 내용이며, 금회 변경은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모인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면적 변경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익산시 신동 500-7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9	285% 이하	◦ 「익산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용도지역 선형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1	4,108 (176)	111,322 (260)	-	-	-	-	-	-	1	4,108 (176)	111,322 (260)
	변경	1	4,108 (176)	111,345 (283)							1	4,108 (176)	111,345 (283)
대로	기정	1	4,108 (176)	111,322 (260)	-	-	-	-	-	-	1	4,108 (176)	111,322 (260)
	변경	1	4,108 (176)	111,345 (283)							1	4,108 (176)	111,345 (283)

※ ( )안의 수치는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도로계획 내용임

※ 금회 변경은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	25~32	보조 간선 도로	4,108 (176)	평화동 295-2구	신동 395-2대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299호 (86.7.4)	

※ ( )안의 수치는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도로계획 연장임

※ 기정사항은 2022년 7월 22일 「익산시 고시 제2022-12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상의 결정 내용이며, 금회 변경은 도로시설에 대한 선형변경은 없으며,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임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모인 근린공원	근린공원	익산시 신동, 모현동2가 일원	153,145 (753)	- (증) 45)	153,145 (798)	내무부고시 제417호 (58.2.21)	

※ ( )안의 수치는 모인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는 공원계획 면적임(도로 중복구간 면적은 제외)

※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지적분할측량에 따라 모인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속하는 공원의 면적은 변경되나(공원시설에 대한 선형변경은 없음), 모인근린공원 전체면적은 변경 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A	33,967	증) 49	34,016	1	익산시 신동 500-7번지 일원	33,967	증) 49	34,016	공동주택용지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A-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285%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배 치		◦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향과 위치를 다양화하여 배치 (권장)
		형 태		◦ 주변환경과 상호조화에 의한 전체적인 통일감을 부여하여 질적 수준 제고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와 건축물 외벽 일체감 · 동질감으로 이미지 제고 (권장)
		색 채		◦ 익산시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장색채로 배색을 통하여 조화로운 색채의 사용 (권장)
		건축선		◦ 2.5~3.0m 건축한계선 지정 (관련 도면 참조)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A-1 (비공원시설 동측)	차량진출입허용구간	대로3-10호선

3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

익산시 고시 제2022-166호

익산시 역사가문화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고시

익산시 고시 제2018-95호(2018.08.16.), 제2019-95호(2019.09.11.), 제2020-22호(2020. 2. 7.) 및 제2021-144호(2021. 8. 30.)로 고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고시 합니다.

2022. 9. 30.

익 산 시 장

1 계획의 개요

ㅇ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명칭 :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 활성화 지역 : 익산시 중앙동, 남중동 일원
- 활성화 지역면적 : 185,007㎡

2 계획의 세부내용

ㅇ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내용

- 계획의 목표 (변경)
  - · 익산 중심상권 기능 회복 및 지원기능 향상
  - · 도시 역사·문화·예술 거점화 및 진입기능 강화
  - ·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변경)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6년간, 1년연장)
  - 사 업 비 : 25,000백만원(국비 15,000, 지방비 10,000)
  - **도시재생사업(경미한 변경)**

전략	단위사업	사업내용	비 고
익산사회및경제상생거점조성	익산 사회·경제 어울림 센터 조성	○익산 창업 및 사회적경제 어울림센터 조성	'18~'23년(1년연장)
		○익산 창업 및 사회적경제 어울림센터 진입로 정비	'18~'22년(당초사업기간)
		○빈공간 조사, 매칭, 활용연구 및 창업지원	'18~'23년(1년연장)
푸드 문화산업 활성화	익산 푸드 문화메카 조성	○익산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	'18~'23년(1년연장)
		○익산 음식/식품 문화축제 운영	'18~'22년(당초사업기간)
		○원도심 음식업종 공동마케팅지원 및 경관정비	'18~'22년(당초사업기간)
중심상권 커뮤니티 활성화	중·매·서 커뮤니티 라운지조성	○원도심 상권기능 지원 및 커뮤니티시설 조성	'18~'23년(1년연장)
		○중앙시장 골목길 정비	'18~'22년(당초사업기간)
도심 유무형 관광자원 활용	'삼산' 기억·명소화 프로젝트	○익산 근대역사관 복원·체험시설 조성	'18~'23년(1년연장)
		○익산 근대역사·문화·예술축제 운영	'18~'22년(당초사업기간)
		○원도심 역사·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루트화	'18~'23년(1년연장)
익산 진입부 도시경관 개선	익산역 프롬나드 조성	○문화이리로 조성	'18~'22년(당초사업기간)
		○문화주차장 조성	'18~'23년(1년연장)
통합 커뮤니티 거점 조성	세대공감 커뮤니티 센터 조성	○세대공감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18~'23년(1년연장)
		○생활커뮤니티도로 정비	'18~'23년(1년연장)
재생역량 기반 마련	익산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대학 운영	'18~'23년(1년연장)
		○주민공모사업 운영	'18~'22년(당초사업기간)
		○거버넌스 운영	'18~'23년(1년연장)

• 파급효과

· 보행친화적 가로환경 조성을 통한 원도심 유동인구 증대로 연도형 상권의 활성화

·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의 도심 유입 촉진

· 사업별로 조직된 주민조직과 행정의 협치를 통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기초생활인프라 - 휴식시설(도시공원) 확충

:「익산역 프롬나드 조성」내 '문화주차장'

• 행위 제한 적용지역 : 해당사항 없음

ㅇ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 목표별 설정된 성과지표에 적합한 측정대상 및 방법, 주체, 시기를 설정하여 익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표별 모니터링을 실시 운영하고, 성과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지표를 조정하여 사업시행에 보완·반영

ㅇ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계획수립 및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부서간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주민(민간)과 행정간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지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을 위한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으로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열람

ㅇ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ㅇ 열람장소 : 익산시청 도시재생과(☎859-4563)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재생과(☎859-456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공고 제2022-2586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조례 위임사항 신설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 용어 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 및 기타 용어의 명확화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조례 위임에 따른 신설(안 제12조)

나. 상위법 용어("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정비에 따라 관련 조문 용어 정비(안 제19조 외 다수)

다. 상위법령 삭제로 인한 법령 정비(안 제26조,제28조)

라. 용어의 명백화를 위해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정비(안 제35,제38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2) 익산시청 회계과(전화: 063-859-5671, FAX: 063-859-5056)

3) E-mail: poohoosarang@hanmail.net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회계과 담당자 최성용(☎ 063-859-56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익산시 조례 제2022- 2586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6조제1항 중 “사용·수익 허가대상”을 “사용허가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하여서”를 “사용허가하여서”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할”을 “사용허가 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을 “(사용허가의 수의계약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시”를 “사용허가시”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수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3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일반재산”을 삽입한다.

제24조 앞에 “제1절 대부”를 삽입한다.

제26조 중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를 “영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로 한다.

제28조 앞에 “제4장 일반재산”을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1절 대부”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광업·채석”을 “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공용면적×사용·수익허가”를 각각 “공용면적×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영 제35조”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중 “납부기간”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67조 중 “국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②(생 략) <신 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②(현행과 같음) ③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본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 - 사용허가 대상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사용허가--------- ---------- ---------- ---------- ---------- -.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사용허가하여서--------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	제20조(사용허가) ----------

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수의의 방법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2(사용허가의 수의계약 대상) ---------- 사용허가시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수용허가부의 비치) ---------- 사용허가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

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용허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사용허가- ---------- ---------- ----------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사용허가----- ----------
<신 설>	제4장 일반재산
<신 설>	제1절 대부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영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4장 일반재산	<삭 제>
제1절 대부	<삭 제>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채석----------.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생 략)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결정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공용면적의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건물 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1. ---------- 공용면적×사용허가----------
2. 부지 면적: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2. ---------- 공용면적×사용허가----------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영 제35조---------- ---------- ---------- 사용허가----------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③ ---------- ---------- 사용허가하는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④ ---------- ---- 사용허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⑤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사용허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사용허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사용허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용허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납부기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납부기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2. ---------- 납부기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준용) ---------- 공유재산----------.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용어변경 근거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조례 제12조3항 신설 근거법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시행일: 2023. 1. 1.] 제7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2호

조례 제25조의2, 및 제25조3 신설 관련법령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20. 12. 22.>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2022. 6. 28.>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조례 제26조 삭제 근거법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2019. 7. 2., 2020. 12. 22., 2022. 4. 20.>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삭제 <2020. 12. 22.>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 1. 9.>
5. 제29조 제1항 제13호·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제23조 삭제 <2022. 4. 20.>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2022. 6. 28.>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10. 6. 28., 2010. 8. 4., 2012. 4. 10.,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9. 18.>

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5. 삭제 <2018. 1. 9.>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부기간을 납부기한 근거법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조례 제32조 삭제 근거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약칭: 외국인투자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3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2. 12. 11., 2020. 2. 4.>
1.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 삭제 <2020. 2. 4.>
⑦ 삭제 <2020. 2. 4.>
⑧ 삭제 <2020. 2. 4.>
⑨ 삭제 <2020. 2. 4.>
⑩ 삭제 <2020. 2. 4.>
⑪ 삭제 <2020. 2. 4.>

익산시 공고 제2022-2619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안 제12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 조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전화 063-859-5925, 팩스 063-859-5073)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859-5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3년 이내로”를 “5년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운영) ① (생 략) 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④ (생 략)	제12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5년으로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